

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(제12조제1항 관련)

1.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

영역	교과목		이수과목 (학점)
가. 교사 인 성	보육교사(인성)론, 아동권리와 복지		2과목 (6학점)
나. 보육 지 식과 기술	필수	보육학개론, 보육 과정, 영유아 발달, 영유아 교수 방법론, 놀이지도, 언어지도, 아동음악(또는 아동동 작, 아동미술), 아동수학지도(또는 아동과학지도), 아동 안전관리(또는 아동생활지도)	9과목 (27학점)
	선택	아동건강교육, 영유아 사회정서지도, 아동문학교 육, 아동상담론, 장애아 지도, 특수아동 이해, 어 린이집 운영 관리,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 가, 보육정책론, 정신건강론,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아동간호학, 아동영양학, 부모교육론, 가족복지론, 가 족관계론, 지역사회복지론	4과목 (12학점) 이상
다. 보육 실 무	아동관찰 및 행동연구, 보육실습		2과목 (6학점)

※ 비고

1.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
으로 인정하고,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
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.
2.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, 최소 2학점이여야 한다.
3. 17과목 이상,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2. 대면 교과목

영역	교과목
가. 교사 인성	보육교사(인성)론, 아동권리와 복지
나. 보육 지식 과 기술	놀이지도, 언어지도, 아동음악(또는 아동동작, 아동미술), 아동수학 지도(또는 아동과학지도), 아동안전관리(또는 아동생활지도)
다. 보육 실무	아동관찰 및 행동연구, 보육실습

※ 비고

1.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.
2.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.

- 가. 보육실습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한다.
- 나. 보육현장실습은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,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.
- 다.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때에 보육정원이 15명 이상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육실습을 지도해야 한다.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하로 한다.
- 라. 보육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,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하루에 실습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로 실습한 시간을 인정한다.
- 마. 보육실습의 평가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보육실습 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,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